

인천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7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7179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가소4153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조영진

변론 종결 2020. 6. 11.

판결 선고 2020. 7.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가소4153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선진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옆을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고 경위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선진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시한 'C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28번'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각 운행하던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로서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크게 우회전하여 진입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민

판사임정택

판사윤재남